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우정청명	취급 가능한 군부대 소재 군사우체국명
서울	22, 77, 138
경인	14, 86, 91, 92, 94, 95, 103, 105, 109, 110, 111, 117, 118, 130, 132, 309, 317, 337, 601, 603, 800, 803, 867, 900
부산	80, 88, 211, 306, 307, 321, 336, 602, 605
충청	76, 78, 90, 119, 120, 308, 335, 383, 501
전남	75, 8, 305
경북	79, 96, 134, 304, 503, 209, 322
전북	89
강원	31, 71, 73, 81, 93, 97, 99, 100, 101, 104, 107, 108, 114, 116, 123, 323, 334, 502, 604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